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1일 수요일 음 2월 17일 (9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5~7℃, 낮 최고 기온은 11~13℃의 분포를 보이겠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2.0~4.0m로 일겠으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항해·조업선박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해뜸 06:50 / 해짐 18:39	달뜸 20:28 / 달짐 07:59
물때	만조 11:54 / 00:00	간조 05:59 / 18:2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4/15℃
모레	흐림	9/1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높음

월드뉴스

中 붕괴 코로나19 시설서 모자 극적 생환

49시간만에 구조, 사망 18명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의 코로나19 격리 시설 붕괴 49시간 만에 극적으로 한 어린이와 어머니가 구조됐다.

10일 청두상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밤 8시18분(이하 현지시간) 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격리 시설로 쓰이던 신자호텔 건물 붕괴 현장에서 10살 어린이와 이 어린이의 어머니를 구해냈다.

이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자호텔 건물이 붕괴한 것은 지난 8일 오후 7시5분. 이들 모자의 구조는 구조 골든아워로 여겨지는 48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구조대원.

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이미 숨진 매몰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50분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전날 오후 발표된 10명보다 8명 더 많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구조 당국은 붕괴 현장에 아직도 12명이 더 갇힌 것으로 보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알려왔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 3월5일자 본보 14면 월드뉴스 '홍콩 재벌 3세 수술후 사망 의료소송'이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 중 A성형외과는 성형외과라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는 의원이라며 A성형외과가 아닌 A의원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의원'을 '성형외과'로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알츠하이머 병의 역사

박 준 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로마시대의 평균 수명은 28세, 조선시대 왕의 평균수명도 47세에 불과했지만, 의학의 발달, 공중위생, 영양상태의 개선 등으로 수명은 크게 연장돼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이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해 노년기의 병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됐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치매이다.

옛날에는 치매라는 병이 없었을까? 물론 아니다. 문헌상에서 치매에 대한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약 45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치매환자 증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 가장 장수한 영조도 치매를 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알츠하이머병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자 병리학자인 알츠하이머이다. 그는 1906년 51세 여자환자인 아우구스테의 기억력장애, 환청, 망상, 불면, 초조 등의 증상과 조직검사 결과를 종합해 65세 미만 초로성 치매환자의 증례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발표 이후 반세기 이상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연구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70년 후반이다. 그 당시 65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치매는 질환보다는 정상노화의 연장으로 생각됐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노년기 치매가 신경병리학적으로 1906년 발표된 초로성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병리적 소견을 갖고 있는 동일한 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년기 치매가 정상 노화가 아닌 병이라는 개념의 변화는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노년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작됐다.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이고, 알츠하이머 병은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하고 대부분은 65세 이상에서 발병한다. 처음 1906년 알츠하이머가 발표했던 65세 미만 초로성 알츠하이머병은 실제로는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측면에서는 노년기 알츠하이머병이 훨씬 중요하다.

1994년 11월 미국 전 대통령인 레이건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이 병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게 됐고, 많은 연구 인력과 연구비가 알츠하이머 병 연구에 투입하는 시발점이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매와의 싸움은 쉽지 않다. 치매 경과를 늦추는 약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보다는 더 큰 효과를 내는 새로운 신약연구들은 최근 10년간 성공하지 못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은 100m 달리기라면 알츠하이머 병과의 싸움은 마라톤이다.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복이 알츠하이머 병 정복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더디지만 분명 치매 정복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조급하지 않고 더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많은 사람의 지혜들이 점점 쌓이게 된다면, 알츠하이머 병도 정복될 날도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는다.

열린마당

자동차세 할인 혜택받는 방법

한 경 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당초 부과된 금액보다 7.5%를 할인 받을 수가 있음으로 지금이라도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 (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폐차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환급 계좌를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알려줘야 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를 한 다음달에 소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한 후에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는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문화실천

강 미 숙
제주동부소방서 위미여성의용소방대장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보고되는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소멸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동원해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급속히 빠른 탓에 통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이 다음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숙지해 가족을 지키는 안전문화 실천이 절실하다.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둘째,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올바른 기침예절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넷째, 38℃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 번호 064-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제공에 임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시각각 전해지는 관련뉴스와 속보에 예민해지는 일상에 피곤해하고 있다.

벚꽃이 피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전 국민의 노력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마음 편히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08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 피 고 인 김 종 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60 (2015고단702, 2018고단59)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고 권 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525 (2013고단 867, 2015고단726,2018고단55)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박 도 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35 (2013고단751, 2013고단993)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이 용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35 (2013고단457, 2013고정569)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김 영 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35 (2015고단727, 2018고단58)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김 성 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22 (2013고단504, 2013고단772,2013고단1495,2015고단700) 상해등
• 피 고 인 박 인 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20 (2013고단1128, 2016고단746,2016고단2558,2018고단2341)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김 학 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20 (2013고단1128) 업무방해
• 피 고 인 박 용 성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0.

판사 박 준 석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0년 3월 9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연학"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1일

연학 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15-3
대표이사 임 하 나